

스페셜올림픽코리아 소청 및 처리절차에 관한 세칙

2015.01.01. 제정

제1장 총 칙

제 1조 (근거 및 목적)

이 세칙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대회규정 제 71조에 의거 각종 대회에 참가한 임원, 선수, 보호자등에 부정, 불미한 사실이 있거나 소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적용범위)

이 세칙은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및 시·도지부, 종목별위원회와 그 단체의 산하 모든 조직에서 주관하는 대회 중 발생하는 소청 및 이의 신청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 3조 (소청대상)

소청 및 이의신청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.

1. 불공정한 판정
2. 승부조작
3. 기타 경기운영에 대한 불만사항

제 4조 (소청시기)

- ① 경기 중 발생하는 소청은 해당 경기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소청하여야 한다.
- ② 대회가 종료 된 후에는 소청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.
- ③ 이의 신청은 코치, 단장이 경기위원장에게 할 수 있다.

제 5조 (소청절차)

경기와 관련(기록, 판정 등)하여 발생하는 소청을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소청 비용(100,000 원)과 지정양식에 의거 제출되어야 한다.

제 6조 (소청위원회의 구성)

각종 대회 시 마다 소청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소청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다.

1. 위원장 1인
2. 부 위원장 1인
3. 위원 10인 이내 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제 7조 (소청의 처리)

- ① 종목별 소청은 1차 해당 종목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, 현장처리가 불가능한 소청 건에 대해서만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소청 되어야 한다.
- ② 소청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제 8조 (소청의 완료)

- ① 소청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재심사하여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소청자에게 통보한다.
- ② 재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